

定 款

2023. 04

사단법인 용인시동물보호협회

사단법인 용인시동물보호협회 정관

제정 2018.06.23.

개정 2020.02.25.

개정 2023.04.0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용인시동물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152번길 62, 상가동 203호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협회는 버림받고 학대 받는 동물을 구조하고 입양시키며 동물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동물 보호 시설 등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와 동물 복지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반려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유기동물, 학대받는 동물 등의 구조와 입양
2. 동물 입양센터, 동물 보호소 등 지원
3. 동물보호·동물복지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4.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재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재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3인 이상 7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 ①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32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회계의 공개)

- ① 협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공개한다.

제34조(예산편성)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 ①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 및 설립당시 임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및 설립당초의 임원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4.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의 기명날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